

아)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6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제1항 제2호(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따라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 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자) 생활근거지 배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4조)

(1) 신규임용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규임용교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중에 신규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제2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원로교사의 배치)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차) 신원조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제1항)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신원조사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의 임용에 있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카) 전력 조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그 교육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교육 공무원 전력 조회서에 따라 그 교육공무원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서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타) 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파) 선서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제2항)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 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가) 임명장 또는 임용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